#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423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배현진·김소희·김태호

박정훈 • 정성국 • 고동진

김석기 • 우재준 • 김성원

김희정 · 정희용 · 이인선

박정하 • 조경태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해제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 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 제4항).

법률 제 호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 2.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급여 등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④ -----다음 각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 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신 설> 경우 <신 설> 2.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 형법」 <u>제2편제1장(반란의</u> 죄), 제2장(이적의 죄), 「국 가보안법 | (제10조는 제외한 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